제주특별자치도 제주4․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

[시행 2018. 8. 23.] [조례 제2095호, 2018. 8. 23., 일부개정]

제주특별자치도(4․3지원과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제주4·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킴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주4·3평화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공모) 제주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매년 제주4·3평화문학상(이하 "4·3문학상"이라 한다) 수상작을 선정하기 위하여 문학작품을 공개 모집한다.

제3조(공모부문 및 자격) ① 공개 모집하는 문학작품은 시, 소설, 논픽션(상상으로 꾸민 이야기가 아닌, 사실에 근거하여 쓴 작품. 수기, 자서전, 기행문 등) 부문으로 한다.

② 누구나 제1항에 따른 공개 모집에 응모할 수 있다. 다만, 응모작은 미발표 한글창작품이어야 한다. [전문개정 2018. 8. 23.]

제3조의 2(시상 등) ① 시상인원은 각 공모부문별 1명으로 한다. 다만, 심사결과 수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패와 시상금을 지급한다.

③ 이 조례에 따라 4·3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에 대하여는 장르에 구별 없이 거듭 시상하지 아니한다. [본조신설 2018. 8. 23.]

제4조(저작권) 4·3문학상 수상작품에 대한 저작권과 2차적 저작권(수상작의 번역·각색·영상물 등 포함)은 수상일로부터 도지사에게 귀속되며, 귀속 기간은 도지사가 정한다.

제5조(주관) ① 제2조에 따른 공모의 방법과 응모작의 심사, 수상작 선정 등 전반적인 운영은 제6조에 따른 제주4·3평화문학상 운영위원회(이하 "운영위원회"라 한다)에서 주관한다.

② 4·3문학상의 운영에 대하여「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」제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제주4·3평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. [전문개정 2018. 8. 23.]

제6조(운영위원회의 설치) ① 도지사는 4·3문학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운영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18. 8. 23.>

② 운영위원회는 4·3문학상을 운영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18. 8. 23.>

1. 4·3문학상 공모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2. 예비심사위원회 및 본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
3. 수상작 선정 및 발간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

제7조(운영위원회의 구성)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 중 제주4·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문학가와 4·3 관련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, 「여성발전기본법」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정 성(性)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추가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기존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. <신설 2018. 8. 23.>

⑥ 운영위원 및 제10조의 심사위원은 4·3문학상의 심의·의결안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,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·의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척되거나 당사자 스스로 기피 또는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 <신설 2018. 8. 23.>

제8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 <신설 2018. 8. 23.>

제9조(운영위원회의 회의)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(심사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장은 4·3문학상 공모에 응모한 작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비심사위원회 및 본심사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장은 수상자를 선정하고 심사결과 및 심사평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.

제11조(심사 내용의 공표 금지) 4·3문학상 응모작의 심사 내용은 공표하지 않으며,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. 다만 심사평은 공개할 수 있다.

제12조(실비지급)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<제2095호, 2018. 8. 23.>

부칙

제1조(시행일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)

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「제주4·3평화문학상 운영위원회 운영규정」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.

제3조(위원위촉에 관한 경과조치)

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「제주4·3평화문학상 운영위원회 운영규정」에 의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기존 운영위원회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제4조(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)

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「제주4·3평화문학상 운영위원회 운영규정」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본다. 부칙 <제2095호, 2018. 8. 23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